

대부제도(자녀학자금)

대학 취학 또는 재학 자녀에 대한 학업장려 및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1 운영기준

구분	내용
대부기준	> 대학 취학/재학자녀 최대 2자녀, 16학기 대부가능(1자녀당 최대8학기) > 대학원, 해외어학연수, 이수 등 과정은 대부제외 > 동일학년, 동일학기는 중복 신청불가 > 대부대상 지정자녀는 중도 변경 불가 >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
대부금액	> 등록금고지서상 입학금, 수업료, 등록금(예치금 포함)으로 표기된 금액(실습비 등 기타 표기항목은 제외) > 국외대학은 연간 최대 1,200만원(학기당 6백만원)까지 신청가능
채권확보방법	> 연대보증 또는 보증보험 • 연대보증 설정가능한도는 주택자금, 가계안정자금, 자녀학자금 대부 합산 금액으로 누적 3천만원까지 설정가능(상환금액과 무관)
상환기간	5년(거치기간 없음)
이자율	무이자(연체이자율 20%)

2 신청방법 : ERP>HR>개인업무>복지후생>신청>대부(자녀학자금)

구분	내용
대상자녀등록	> 대부신청대상 자녀를 사전 지정 후 대부신청가능(직원당 최대 2자녀) • 대상자녀지정이후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• 처리메뉴 : ERP>HR>개인업무>복지후생>신청>대부(자녀학자금)의 "대상자녀등록"버튼클릭하여 신청 - 첨부화일 : 가족관계증명서(직원-자녀관계 확인가능) - 신청 후 익일까지 업무지원센터 승인예정, 승인 후부터 신청가능
신청	> 매월 1~15일(마감일까지 ERP신청 및 서류 도착분에 한해 접수) • 전산신청시 첨부화일 - (공통)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,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- 연대보증 채권확보 선택에 한해 차용약정서,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※ 보증보험 채권확보 선택한 경우는 반드시 전산상태 "접수"확인 후 보증보험 가입진행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바람 (신청내역 오류발생시 반려될 수 있어 보증보험 재가입 불편 발생)

접수	> 매월 1~20일(정상 신청건에 한해 처리) • 보증보험증권 채권확보 전산 본인등록 진행(보증보험 채권확보자 限)
승인	> 매월 1~25일(정상 신청건에 한해 처리) > 승인된 경우 아래 표기된 대부서류 일괄 원본제출(서명필수) • (공통제출) 전산출력서류(대부신청서, 서약서,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) 가족관계증명서(임직원 및 배우자명의) • (추가제출) 차용약정서,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(연대보증 선택자 限) 보증보험증권(보증보험 선택자 限) > 제출처 :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분당사옥 2층 업무지원센터 자녀학자금 대부담당 (우편번호13606)
지급	> 매월 말일(휴일은 전일, 별도계좌 입금)

3 대부자격조건

- > 부부사원에 대하여는 1인에게만 자격부여(상호연대보증 불가)
- >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
 - 근속3년미만, 정년퇴직 5년 미만자, DC전환자, 전문경력직 신청 시
 - 퇴직연금을 DC전환할 경우, 배우자 명의 계약으로 대부 신청한 경우
 - 주택자금과 가계안정자금, 자녀학자금 대부 합산 금액의 연대보증금액이 누적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상환금액과 무관)
- > 급여압류, 개인회생, 신용회복 중인 직원은 기존 대부 상환완료 시 신청가능
- > 연대보증인이 퇴직한 경우는 2개월 이내 채권확보 변경 의무(미처리시 일시상환 의무)



대부금 수령 후 기한 내 최종서류 미제출 시 대부금 전액 일시 회수

- ▶ 부당대부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 및 복지수혜 5년간 중지
- ▶ 기한 내 미상환할 경우 연체이자율20% 적용, 채권회수 조치(보증보험청구 등)

4 문의처 : 업무지원센터 T.031-727-4236